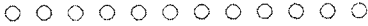


# 환경법



## 폐기물 관리법 중 개정 법률

국회에서 의결된 폐기물관리법중 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1995년 8월 4일

대통령 김 영삼

廢棄物管理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 ● 棄物管理法中改正法律

第2條第2號 내지 第7號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同條第8號를 削除한다.

2. “生活廢棄物”이라 함은 事業場廢棄物의 廢棄物을 말한다.
3. “事業場廢棄物”이라 함은 大氣環境保全法·水質環境保全法 또는 騒音·振動規制法의 規定에 의하여 排出施設을 設置·운영하는 事業場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事業場에서 발생되는 廢棄物을 말한다.
4. “指定廢棄物”이라 함은 事業場廢棄物중 廢油·廢酸 등 周邊環境을 汚染시킬 수 있는 有害한 物質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廢棄物을 말한다.
5. “처리”라 함은 廢棄物의 燒却·中化·破碎·固形化 등에 의한 中間處理와 埋立·海域排出등에 의한 最終處理를 말한다.
6. “再生處理”라 함은 廢棄物의 中間處理로서 廢棄物을 再利用·再生利用하기 위하여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7. “廢棄物處理施設”이라 함은 廢棄物의 中間處理施設과 最終處理施設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施設을 말한다.

第4條第1項을 다음과 같이 하고, 同條第2項중 “一般

廢棄物處理事業”을 “廢棄物處理事業”으로 하며, 同條第3項중 “特定廢棄物”을 각각 “指定廢棄物”로 하고, 同條第4項중 “一般廢棄物處理事業”을 “廢棄物處理事業”으로 한다.

① 市長·郡守·區廳長(地方自治團體인 區의 區廳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管轄區域안의 廢棄物의 排出 및 處理狀況을 파악하여 廢棄物이 적정처리될 수 있도록 廢棄物處理施設을 設置·운영하여야 하며, 廢棄物의 收集·運搬·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資質向上으로 廢棄物處理事業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住民과 事業者의 清掃意識 함양과 廢棄物發生抑制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第5條의 題目중 “一般廢棄物”을 “廢棄物”로 하고, 同條第1項을 다음과 같이 하며, 同條第2項중 “地方自治團體의 長”을 “環境部長官,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으로, “廣域一般廢棄物處理施設”을 “廣域廢棄物處理施設”로 한다.

① 環境部長官, 市·道知事 또는 市場·郡守·區廳長은 2이상의 市·道 또는 市·郡·區에서 발생되는 廢棄物을 廣域的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廣域廢棄物處理施設(指定廢棄物公共處理施設을 포함한다)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設置·운영할 수 있다.

第5條의 2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5條의 2(廢棄物處理施設에의 搬入人手數料) ① 第4

條第1項 또는 第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廢棄物處理施設을 設置·운영하는 機關은 당해 廢棄物處理施設에 搬入되는 廢棄物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費用(이하 “搬入手數料”라 한다)을 廢棄物을 搬入하는 者로부터 徵收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경우에 2이상의 地方自治團體가 공동으로 設置·운영하는 廢棄物處理施設에 있어서는 해당 地方自治團體간에 協議하여 手數料를 決定하여야 한다.

③ 搬入手數料의 금액은 徵收機關이 國家인 경우에는 環境部令으로, 地方自治團體인 경우에는 條例로 정한다.

第8條第1項前段 및 第2項 중 “一般廢棄物處理”를 각 “廢棄物處理”로 하고, 同條第3項중 “一般廢棄物處理에 관한 基本計劃과 特定廢棄物의 發生量·發生地域 및 處理施設 設置의 孚當性 檢針資料등을 基礎로 하여”를 “廢棄物處理基本計劃을 기초로 하여”로 한다.

第9條 및 第10條를 각각 削除한다.

第2章의 題目 “廢棄物의 收集·運搬·처리”를 廢棄物의 “排出 및 처리”로 하고, 同章중 “第1節 一般廢棄物”을 削除한다.

第12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12條(廢棄物의 처리기준등) 누구든지 廢棄物을 收集·運搬·보관·처리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第13條의 題目중 “一般廢棄物”을 “生活廢棄物”로 하고, 同條第1項중 “一般廢棄物處理區域”을 “管轄區域”으로, “一般廢棄物”을 “生活廢棄物”로 하며, 同項에 但書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다만,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長·郡守·區廳長이 지정하는 地域을 제외한다.

第13條第2項중 “第17條의 規定에 의한 一般廢棄物處理業者”를 “第2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廢棄物處理業의 許可를 받은 者(이하 “廢棄物處理業者”라 한다)”로 하며, 同條第3項을 削除하고, 同條制4項중 “一般廢棄物”을 “生活廢棄物”로 하여 이를 第3項으로 하며, 同條에 第4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④ 環境部長官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手數料를 정하고 자하는 地方自治團體에 대하여 廢棄物排出量에 따라 手數料를 차등 徵收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第14條를 削除한다.

第15條의 題目중 “一般廢棄物排出者”를 “生活廢棄物排出者”로 하고, 同條第1項을 다음과 같이 하며, 同條第2項중 “一般廢棄物排出者”를 “生活廢棄物排出者”로, “一般廢棄物”을 “生活廢棄物”로 한다.

① 生活廢棄物이 排出되는 土地·建物の 所有者·占有者 또는 管理者(이하 “生活廢棄物排出者”라 한다)는 관할 市·郡·區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따라 生活環境保全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당해 廢棄物을 스스로 처리 하거나 減量하여 排出하여야 한다.

第16條의 題目중 “一般廢棄物保管施設”을 “生活廢棄物保管施設”로 하고, 同條第1項중 “一般廢棄物排出者”를 “生活廢棄物排出者”로, “一般廢棄物保管施設”을 “生活廢棄物保管施設”로 하며, 同條第2項중 “一般廢棄物排出者”를 각각 “生活廢棄物排出者”로 한다.

第17條 내지 第23條를 각각 削除한다.

第2章중 “第2節 特定廢棄物”을 削除한다.

第24條의 題目중 “特定廢棄物排出者”를 “事業場廢棄物排出者”로 하고, 同條第1項 本文중 “特定廢棄物”을 “事業場廢棄物”로, “特定廢棄物排出者”를 “事業場廢棄物排出者”로 하며, 同條第1號중 “事業活動에 따라 발생하는 特定廢棄物”을 “事業場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廢棄物”로 하고, 同項第1號중 “特定廢棄物”을 “事業場廢棄物”로 하며, 同條第2項 및 第3項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同條에 第4項 및 第5項을 각각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② 環境部令이 정하는 事業場廢棄物排出者는 事業場廢棄物의 종류·發生量등을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市長·郡守·區廳長에게 報告하여야 한다. 申告事項중 環境部令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市長·郡守·區廳長은 申告받은 사항중 指定廢棄物에 관한 사항을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市·道知事를 거쳐 環境部長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事業場廢棄物排出者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帳簿를 비치하고, 事業場廢棄物의 發生量·再利用 및 再生利用狀況·處理實績등을 記錄하되, 그 보존기간은 最終記載를 한 날부터 3年으로 한다.

④ 大統領令이 정하는 業種 및 규모이상의 事業場廢棄物排出者는 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事業場廢棄物의

# 환 경 법

發生抑制을 위하여 環境部長官과 관계 中央行政機關의 長이 環境部令이 정하는 基本方針과 節次에 따라 統合하여 告示하는 指針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環境部長官은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告示된 指針을 正當한 사유없이 준수하지 아니하는 事業場廢棄物 排出者에 대하여는 事業場廢棄物의 發生抑制에 필요한 措置를 명할 수 있다.

第25條의 題目중 “特定廢棄物”을 “事業場廢棄物”로 하고, 同條第1項을 다음과 같이 하며, 同條第2項 및 第3項을 각각 削除하고, 同條第4項을 다음과 같이 하며, 同條第5項중 “環境部長官은 特定廢棄物을 처리하는 者가 特定廢棄物을 처리함에 있어 第4項의 基準”을 “環境部長官,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事業場廢棄物을 처리하는 者가 事業場廢棄物을 처리함에 있어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기준”으로, “特定廢棄物”을 “事業場廢棄物”로 하여 이를 第6項으로 하고, 同條에 第5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① 事業場廢棄物排出者는 그의 事業場에서 발생하는 廢棄物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第2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廢棄物處理業者, 第44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다른 사람의 廢棄物을 再生處理하는 者, 第4條 또는 第5條의 規定에 의한 廢棄物處理施設을 設置·운영하는 者에게 委託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④ 事業場廢棄物중 指定廢棄物을 運搬·처리하는 者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環境部長官에게 그 運搬 또는 처리에 관한 사항을 報告하여야 한다.

⑤ 2이상의 事業場廢棄物排出者는 각각의 事業場에서 발생하는 廢棄物을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公同으로 收集·運搬·보관·처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廢棄物處理施設을 公同으로 設置·운영할 수 있다.

第25條 다음에 “第3章 廢棄物處理業등”을 삽입하고, 第26條 내지 第28條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第26條(廢棄物處理業) ① 廢棄物의 收集·運搬 또는 처리를 業(이하 “廢棄物處理業”이라 한다)으로 하고자 하는 者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施設·裝

備·技術能力·資本金을 갖추어 業種別로 市·道知事の 許可를 받아야 한다. 許可받은 사항중 環境部令이 정하는 重要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指定廢棄物을 대상으로 하여 廢棄物處理業을 하고자 하는 者는 環境部長官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② 廢棄物處理業의 業種區分과 營業內容은 다음과 같다.

1. 廢棄物收集·運搬業

廢棄物을 收集하여 處理場所로 運搬하는 營業

2. 廢棄物中間處理業

廢棄物中間處理施設을 갖추고 廢棄物을 燒却·中和 破碎·固化化등의 방법에 의하여 中間處理하는 營業

3. 廢棄物最終處理業

廢棄物最終處理施設을 갖추고 廢棄物을 埋立·海域排出등의 방법에 의하여 최종처리하는 營業

4. 廢棄物再生處理業

廢棄物中間處理施設을 갖추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廢棄物을 再生處理하는 營業

5. 廢棄物綜合處理業

廢棄物處理施設을 갖추고, 廢棄物을 再生處理, 中間處理, 최종처리를 함께 하는 영업

③ 第2項第2號 내지 第5號에 해당하는 廢棄物處理業 許可를 받은 者는 同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廢棄物收集·運搬業의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그 處理對象廢棄物을 스스로 收集號運搬할 수 있다.

④ 環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は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함에 있어서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營業區域을 정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다만, 그 營業區域의 제한은 廢棄物收集·運搬業의 경우에 한한다.

第27條(缺格事由)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廢棄物處理業의 許可를 받을 수 없다.

1. 未成年者·禁治產者 또는 限定治產者

2. 破産宣告를 받고 復權되지 아니한 者

3. 이 法을 위반하여 懲役이상의 刑의 宣告를 받고 그 刑의 號行이 종료되거나 號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年을 경과하지 아니한 者

4. 이 法을 위반하여 懲役이상의 刑의 號行猶豫의 宣告를 받고 그 號行猶豫期間이 경과하지 아니한 者

5. 廢棄物處理業의 許可가 取消된 者로서 그 許可가 取消된 날부터 2年을 경과하지 아니한 者

6. 任員중에 第1號 내지 第4號의 1에 해당하는 者가 있는 法人

第28條(許可의 取消등) 環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廢棄物管理業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許可를 取消하거나 6月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營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第1號 또는 第2號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許可를 取消하여야 한다.

1. 第27條第1號 내지 第4號 또는 第6號 에 해당된 경우. 다만, 法人의 任員중 第27條第6號에 해당하는 者가 있는 경우 2月이내에 그 任員을 改正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許可를 받은 경우

3. 許可를 받은 후 1年이내에 營業을 開始하지 아니하거나 正當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1年以上 休業한 경우

4. 第2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施設·裝備·技術能力·資本金에 미달하게 된 경우

5. 기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경우

第28條 다음의 “第3章 廢棄物處理施設周邊影響地域의 지원등”을 削除하고, 第29條 내지 第32條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第33條 내지 第35條를 각각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29條(果徵金處分) ① 環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廢棄物處理業者가 第28條第3號 내지 第5號의 1에 대하여 營業의 정지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 그 營業의 정지가 당해 營業의 利用者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公益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營業의 정지에 갈음하여 2千萬 원이하의 課徵金を 賦課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課徵金を 賦課하는 위반행위의 種別과 정도에 따른 課徵金の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課徵金은 環境部長官의 경우에는 國稅徵收의 예에 따라, 市·道知事의 경우에는 地方稅徵收의 예에 따라 徵收한다.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課徵金으로 徵收한 금액은 徵收主體가 사용되되 廣域廢棄物處理施設의 확충등 大

統領令이 정하는 用途로 사용하여야 한다.

第30條(廢棄物處理施設의 設置 및 관리) ① 廢棄物處理施設은 環境部令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設置하여야 한다.

② 第2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廢棄物處理業의 許可를 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者의 者가 廢棄物處理施設을 設置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環境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第1號의 廢棄物處理施設을 設置하는 경

우를 제외하며, 第2號의 廢棄物處理施設을 設置하는 경우에는 環境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1. 大統領令이 정하는 廢棄物處理施設로서 産業標準化法 第11條 또는 第28條의 規定에 의한 規格表示許可를 받았거나 團體標準承認을 얻은 廢棄物處理施設

2. 大統領令이 정하는 규모미만의 廢棄物處理施設

③ 第2項의 경우에는 승인을 얻었거나 申告한 사항중 環境部令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각각 변경승인을 얻거나 變更申告를 하여야 한다.

④ 廢棄物處理施設을 設置하는 者는 그 設置工事を 완료한 후 당해 施設의 사용을 開始하고자 할 때에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環境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⑤ 廢棄物處理施設을 設置한 者 또는 그 運營者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관리기준에 따라 그 施設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⑥ 環境部長官은 廢棄物處理施設의 設置 또는 유지·관리가 第1項 및 第5項의 規定에 의한 設置基準 또는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設置한 者 또는 그 運營者에게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당해 施設의 개선을 명하거나 당해 施設의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⑦ 環境部長官은 第6項의 規定에 의한 改善命令과 使用停止命令을 받은 者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施設의 閉鎖를 명할 수 있다.

第31條(다른 法令에 의한 許可·申告등의 擬制) ① 廢棄物處理施設을 設置하고자 하는 者가 第3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승인을 얻거나 申告를 한 경우, 同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廢棄物處理施設을 設置하는 경우

# 환 경 법



및 第2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廢棄物處理業의 許可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廢棄物處理施設에 關한 다음 各號의 許可를 받거나 申告를 한 것으로 본다.

1. 大氣環境保全法 第10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排出施設의 設置許可 또는 申告
2. 水質環境保全法 第10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排出施設의 設置許可 또는 申告
3. 騒音·振動規制法 第9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排出施設의 設置許可 또는 申告

② 廢棄物處理施設을 設置하는 者가 第30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한 경우에는 다음 各號의 申告를 한 것으로 본다.

1. 大氣環境保全法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排出施設의 稼動開始申告
2. 水質環境保全法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排出施設의 稼動開始申告
3. 騒音·振動規制法 第13條의 規定에 의한 排出施設의 稼動開始申告

③ 環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は 第1項 또는 第2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廢棄物處理施設의 設置承認 또는 廢棄物處理業許可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第32條(權利·義務의 承繼等) ① 第26條의 規定에 의한 廢棄物處理業의 許可를 받은 者 또는 第30條의 規定에 의한 廢棄物處理施設의 設置承認을 얻거나 申告를 한 者가 廢棄物處理業 또는 廢棄物處理施設을 讓渡하거나 死亡한 경우 또는 法人의 合併에 의하여 設立되는 法人은 許可·승인 또는 申告에 따른 權利·義務를 承繼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權利·義務를 承繼한 者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環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第33條(廢棄物處理施設의 設計·施工業) ① 廢棄物處理施設의 設計·施工을 業(이하 “廢棄物處理施設設

計·施工業”이라 한다)으로 하고자 하는 者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資格·施設·裝備·技術能力·資本金을 갖추어 環境部長官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규모미만의 廢棄物處理施設의 設計·施工을 業으로 하고자 하는 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廢棄物處理施設設計·施工業의 登錄을 한 者(이하 “設計·施工業者”라 한다)가 登錄한 사항중 環境部令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環境部長官에게 變更登錄을 하여야 한다.

③ 第27條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廢棄物處理施設設計·施工業의 登錄에 關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第27條本文 및 同條第5號의 規程중 “廢棄物處理業”은 이를 “廢棄物處理施設設計·施工業”으로 본다.

第34條(登錄의 取消等) 環境部長官은 設計·施工業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登錄을 取消하거나 6月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營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第1項 또는 第2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登錄을 取消하여야 한다.

1. 第33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第27條第1號 내지 第4號 또는 第6號에 해당된 경우. 다만, 法人의 任員중 第27條第6項에 해당하는 者가 있는 경우 2月이내에 그 任員을 改正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登錄을 한 경우
3. 登錄을 한 후 1年이내에 營業을 開始하지 아니하거나 正當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1年이상 休業한 경우
4. 第33條第1項의 規程에 의한 資格·施設·裝備·技術能力·資本金에 미달하게 된 경우
5. 다른 사람에게 登錄證을 貸與한 경우
6. 設計·施工業者가 그 設計·施工을 不實하게 하거나 都給받은 工事を 一括하여 下都給한 경우
7.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경우

第35條(登錄取消 또는 營業停止된 設計·施工業者의 繼籍工事) ① 第34條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取消 또는 營業停止의 처분을 받은 者는 그 처분전에 체결한 契約分에 한하여 당해 工事의 設計·施工을 계속할 수 있다. 이 경우 環境部長官은 環境部令이 정하는 資格이 있는 者를 施工監理者로 지정하여 工事を 監理·監督

하게 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設計·施工을 하는 者는 당해 施設의 設計·施工을 완료할 때까지는 이 法에 의한 設計·施工業者로 본다.

第39條第1項중 “技術管理人을 두어야 한다. 다만 스스로 技術管理를 하는 경우와 技術管理能力이 있다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와 技術管理代行契約를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技術管理人을 任命(技術管理人의 資格을 갖추어 스스로 技術管理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技術管理能力이 있다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와 技術管理代行契約를 체결하여 이를 環境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技術管理人을 改任한 때 또는 技術管理代行契約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로 하고, 同條第2項중 “준수사항 및 技術管理代行契約등”을 “준수사항·技術管理代行契約 및 申告節次등”으로 한다.

第40條第1項 및 第2項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廢棄物處理業·廢棄物處理施設設計·施工業에 종사하는 技術要員, 廢棄物處理施設의 技術管理人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廢棄物處理擔當者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環境部長官이 실시한 教育을 받아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教育을 받아야 할 者를 雇傭한 者는 그 該當者에 대하여 당해 教育을 받게 하여야 한다.

第41條 本文중 “5年”을 “3年”으로 하고, 同條第1號 및 第2號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同條第3號 내지 第5號를 각각 削除한다.

1. 第2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廢棄物處理業者
2. 第3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廢棄物處理施設을 設置·관리하는 者

第42條중 “第1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一般廢棄物處理業者, 第21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一般廢棄物處理施設의 設計·施工業者 또는 第2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特定廢棄物處理業者”를 “第2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廢棄物處理業者 또는 第3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廢棄物處理施設設計·施工業者”로 한다.

44條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44條의2(廢棄物再生處理申告등) ① 다른 사람의 廢

棄物로서 環境部令이 정하는 廢棄物을 原料·材料·燃料등으로 再生處理(再生處理를 目的으로 하는 收集·運搬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者(第2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廢棄物處理業者를 제외한다)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施設·裝備를 갖추어 市·道知事에게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申告하여야 한다. 申告事項중 環境部令이 정하는 重要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市·道知事は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한 者가 申告한 내용과 다르게 再生處理를 하거나, 그 施設·裝備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施設·裝備가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施設·裝備의 개선 기타 필요한 措置를 명할 수 있다.

③ 市·道知事は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命命을 받은 者가 그 命命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施設·裝備의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을 명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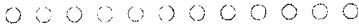
第44條의3第2項중 “環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가”를 “環境部長官이”로, “市·道知事が 告示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環境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를 “環境部長官은 告示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로 하고, 同條第3項중 “環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을 “環境部長官은”으로 하며, 同條第4項중 “環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을 “環境部長官은”으로 하고, 同條同項중 “이 경우 市·道知事が 措置命命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環境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를 削除한다.

第44條의4를 削除한다.

第45條第1項을 다음과 같이 하고, 同條第2項중 “環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을 “環境部長官,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으로 한다.

① 環境部長官,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廢棄物을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廢棄物處理基準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收集·運搬·보관·처리하여 生活環境保全상 중대한 危害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당해 廢棄物의 처리를 한 者 또는 당해 廢棄物의 처리를 委託한 者(受託者가 廢棄物을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廢棄物處理基準에 적합하게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 그 危害의 제거 또는 발생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措置를 명할 수 있다.

# 환경법



第46條중 “環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을 “環境部長官,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으로 한다.

第47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47條(廢棄物處理施設の 事後管理등) ① 第3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設置承認을 얻은 廢棄物處理施設을 設置한 者(第26條의 規定에 의하여 廢棄物處理業의 許可를 받은 者를 포함한다) 그가 設置한 廢棄物處理施設의 사용을 종료하거나 閉鎖하고자 할 때에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環境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를 한 者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廢棄物을 埋立하는 施設을 사용종료 또는 閉鎖한 者는 당해 施設로 인한 住民의 健康·財産 또는 周邊環境의 被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浸出水處理施設을 設置·稼動하는 등의 事後管理를 하여야 한다.

③ 環境部長官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事後管理를 하여야 하는 者가 이를 적합하게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이의 是正을 명할 수 있다.

④ 環境部長官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을 받고도 그 기간내에 이를 是正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로 하여금 이를 代行하게 하고 그 費用을 당해 命令을 받은 者로부터 徵收할 수 있다. 이 경우 代行에 소요되는 費用은 第48條 및 第49條의 規定에 의하여 납부된 事後管理履行保證金·履行保證保險金 또는 事後處理履行保證金の 事前積立金으로 充당할 수 있다.

第50條第1項중 “第48條第1項”을 “第47條第2項”으로 하고, 同條第2項을 削除한다.

第52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52條(國庫補助등) 國家는 豫算의 범위안에서 地方自治團體에 대하여 廢棄物處理施設の 設置에 필요한 費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第53條중 “또는 再活用施設”을 削除한다.

第55條중 “第17條第1項·第22條第1項 및 第26條第1項”을 “第26條第1項 및 第33條第1項”으로 한다.

第57條本文중 “第19條第1項, 第22條第1項 및 第26條第5項”을 “第28條, 第29條第1項 및 第34條”로, “營業의 停止를 命하고자”를 “營業의 정지 또는 課徵金處分을 하고자”로 한다.

第58條第1項중 “地方環境廳長”을 “地方環境官署의 長”으로 한다.

第59條第1號중 “第17條第1項”을 “第26條第1項”으로, “一般廢棄物處理業”을 “廢棄物處理業”으로 하고, 同條第2號중 “第17條第1項”을 “第26條第1項”으로, “一般廢棄物處理業”을 “廢棄物處理業”으로 하며, 同條第3號중 “第20條第6項 또는 第28條第6項”을 “第30條第7項”으로 하고, 同條第4號중 “第21條第3項”을 “第33條第1項”으로, “一般廢棄物處理施設の 設計·施工業”을 “廢棄物處理施設設計·施工業”으로 하며, 同條第5號중 “第21條第3項”을 “第33條第1項”으로, “一般廢棄物處理施設の 設計·施工業”을 “廢棄物處理施設設計·施工業”으로 하고, 同條第6號 및 第7號를 각각 削除한다.

第60條第1項중 “第13條第1項”을 “第12條”로, “一般廢棄物”을 “廢棄物”로 하고, 同條第2號중 “第17條第1項”을 “第26條第1項”으로, “一般廢棄物處理業”을 “廢棄物處理業”으로 하며, 同條第3號중 “第19條第1項”은 第22條第1項”을 “第28條 또는 第34條”로 하고, 同條第4號중 “第20條第2項 또는 第34條”로 하고, 同條第4號중 “第20條第2項 또는 第28條第2項”을 “第30條第2項”으로 하며, 同條第5號중 “第20條第5項 또는 第28條第5項”을 “第30條第6項”으로 하고, 同條第6號를 削除하며, 同條第7號중 “第21條第3項”을 “第33條第2項”으로 하고, 同條第8號중 “特定廢棄物”을 “事業場廢棄物”로 하며, 同條第9號를 削除하고, 同條第10號중 “第25條第5項”을 “第25條第6項”으로 하며, 同條第11號중 “第17條第2項”을 “第47條第3項”으로, “措置命令”을 “是正命令”으로 하고, 同條第14號를 削除한다.

第61條第1號를 다음과 같이 하고, 同條第2號 내지 第4號를 각각 削除하며, 同條第5號중 “第17條第3項 또는 第26條第3項”을 “第26條第4項”으로 하고, 同條第6號

중 “第20條第2項 또는 第28條第2項”을 “第30條第3項”으로 하며, 同條第6號의2중 “第20條第2項”을 “第30條第2項”으로 하고, “또는 變更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申告事項을 變更한 者”를 削除하며, 同條第7號중 “第20條第4項 또는 第28條第4項”을 “第30條第5項”으로 하고, 同條第8號중 “第24條第2項·第27條”를 “第24條第2項·第25條第4項”으로 하며, 同條第9號 및 第10號를 각각 削除하고, 同條第12號중 “두지 아니한 者”를 “任命하지 아니하거나 技術管理代行契約를 체결하지 아니한 者”로 하며, 同條第13號를 다음과 같이 하고, 同條第14號 및 第15號를 각각 削除한다.

1. 第12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廢棄物을 收集·運搬 또는 보관한 者

13. 第42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

第63條第5項중 “第3項”을 “第4項”으로 하여 이를 第6項으로 하고, 同條第4項중 “第2項”을 “第3項”으로, “第3項”을 “第4項”으로 하여 이를 第5項으로 하며, 同條第3項중 “第2項”을 “第3項”으로 하여 이를 第5項으로 하며, 同條第3項중 “第2項”을 “第3項”으로, “그 處分이 告知된 날부터”를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로 하여 이를 第4項으로 하고, 同條第2項중 “第1項”을 “第1項 및 第2項”으로 하여 이를 第3項으로 하며, 同條第1項을 第2項으로 하되 다음과 같이 하고, 同條에 第1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1. 第24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措置命을 위반한 者

2. 第30條第3項 또는 第44條의第1項의 規定에 의한 變更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申告事項을 변경한 者

3. 第44條의2第3項의 規定에 의한 사용중지 또는 使用制限命을 위반한 者

②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1. 第7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廢棄物을 버린 者

2. 第15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을 위반한 者

3. 第16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設置命을 또는 措置命을 위반한 자

4. 第24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帳簿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者

5. 第30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당해 施設의 사용을 開始한 者

6. 第3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申告를 한 者

7. 第40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教育을 받지 아니한 者 또는 教育을 받게 하지 아니한 者

8. 第41條의 規定에 의한 帳簿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者

9. 第4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者

10. 第43條의 規定에 의한 出入·檢査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

11. 第4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아니한 者

## 附則

第 1 條 (施行日) 이 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 2 條 (一般廢棄物處理業 또는 特定廢棄物處理業의 許可에 관한 經過措置) 이 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一般廢棄物處理業 또는 特定廢棄物處理業의 許可를 받은 者는 이 법에 의한 廢棄物處理業의 許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은 施行日부터 1年 6月이 내에 이 법에 의한 許可에 필요한 施設·裝備·技術能力·資本金을 갖추어야 한다.

第 3 條 (一般廢棄物多量排出者 또는 特定廢棄物排出者의 申告에 관한 經過措置) 이 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한 一般廢棄物多量排出者 또는 特定廢棄物排出者의 申告를 한 者는 이 법에 의한 事業場廢棄物排出者의 申告를 한 것으로 본다.

第 4 條 (廢棄物處理施設의 設置에 관한 經過措置) 이 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한 一般廢棄物處理施設 또는 特定廢棄物處理施設은 이 법에 의한 處理方法別 中間處理施設 또는 最終處理施設로 본다. 다만, 이 법 施行日부터 1年 6月이내에 이 법에 의한 中間處理施設 또는 最終處理施設의 設置基準에 적합하도록 당해 施設을 改修하여야 한다.

第 5 條 (廢棄物處理施設設計·施工業의 登錄에 관한 經過措置) 이 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一般



# 환 경 법

廢棄物處理施設設計·施工業의 登錄을 한 者는 이 法에 의한 廢棄物處理施設設計·施工業의 登錄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法 施行日부터 6月이내에 이 法에 의한 登錄에 필요한 資格·施設·裝備·技術能力·資本金을 갖추어야 한다.

第 6 條 (廢棄物再生處理申告에 관한 經過措置) ①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一般廢棄物 또는 特定廢棄物의 再活用申告를 한 者는 이 法에 의한 廢棄物再生處理申告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法 施行日부터 6月이내에 이 法에 의한 再生處理申告에 필요한 施設·裝備를 갖추어야 한다.

②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一般廢棄物 또는 特定廢棄物의 再活用申告를 한 者중 이 法에 의한 廢棄物再生處理業의 處理對象인 廢棄物의 再活用申告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法 施行日부터 1年이내에 이 法에 의한 許可에 필요한 施設·裝備·技術能力 및 資本金을 갖추어야 한다.

第 7 條 (罰則適用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 8 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 資源의 節約과 再活用促進에 관한 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6條 題目중 “一般廢棄物排出者”를 “廢棄物排出者”로 하고, 同條第1項중 “廢棄物處理法 第2條第2號의 規定에 의한 一般廢棄物”을 “廢棄物處理法에 의한 廢棄物”로 “一般廢棄物”을 “廢棄物”로, “一般廢棄物排出者”를 “廢棄物排出者”로 하며, 同條第2項중 “一般廢棄物排出者”를 “廢棄物排出者”로 한다.

제25條第4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廢棄物管理法 第2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廢棄物再生處理業者 및 同法 第44條의2의 規定에 의한 再生處理申告者의 再活用事業

第34條第1項第7號중 “一般廢棄物排出者”를 “生活廢棄物排出者”로 한다.

② 中小企業創業支援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2條第2項第6號중 “第2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一般廢棄物處理施設設置”를 “第3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廢棄物處理施設設置”로 한다.

③ 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4條第1項第7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廢棄物管理法 第3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廢棄物處理施設の 設置承認, 同法 第30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사용개시신고

④ 保健環境研究院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條第1項第3號중 “一般廢棄物·特定廢棄物”을 “廢棄物”로 한다.

⑤ 水質環境保全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9條第1項第1號중 “特定廢棄物”을 “廢棄物管理法, 第2條第4號의 規定에 의한 指定廢棄物”로 한다.

⑥ 環境管理工團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6條第1項第6號중 “一般廢棄物處理施設 및 特定廢棄物處理施設”을 “廢棄物處理施設”로 한다.